성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규제완화정책과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의 위임 없이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제공사항 삭제(안 제8조)
나. 유료 화장실 관리사항 중 편의용품 및 기타 유지·관리사항 삭제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,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다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〔2017. 10. 16. ~ 11. 6〕
라. 성별영향평가분석 : 해당사항 없음
마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- 공중 화장실의 편의 용품 비치 제공사항과 유료 화장실 관리사항 중 편의용품 비치·제공 및 기타 유지·관리사항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임의사항 삭제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